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제33조의2(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9조(과태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의2(원산지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등에 따른 조정),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과징금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14.1.28>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제59조제3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징 금 금 액
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시한 행위	법 제33조의 2제2항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법 제33조의 2제2항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법 제33조의 2제2항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4.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법 제33조의 2제2항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3조의 2제2항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1.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제2호가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 제2호다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 태 료 금 액 기 준		
	1 차	2 차	3 차
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	250	1,000
나. 삭제 <2014.1.28>			
다.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10만원 중 많은 금액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1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

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500	2,000
마.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	300	1,500
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	250	1,000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	500	1,500
아.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	250	1,000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과징금 부과)

-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 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판매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 HS : ○ 품명 : ○ 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예정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p>「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직인</p>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9호서식> (제56조제3항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납부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HS : ○품명 : ○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납부기한		
<p>「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직인</p>				
첨부 : 고지서 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정 기획심사팀 - 408(2009. 6. 29.)
개정 기획심사팀 - 1421(2010. 6. 30.)
개정 특수통관과 - 944(2012. 3. 21.)
개정 특수통관과 - (2014.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제230조(원산지 허위 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제59조(과태료)에 따라 보세구역에 있거나 시중유통단계에 있는 수입물품, 그리고 수출물품(반송 및 환적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중유통단계”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상태에 있는 것(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산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라 한다) 제22류부터 제97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제25류의 식용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식품”이란 HS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 가. 「관세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보완·정정
 - 나. 「관세법시행령」 제245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후 보완·정정·반송 또는 폐기
 -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제3조(각 부서별 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범칙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담당부서”라 한다)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 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조사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 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표시검사 또는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관담당부서 또는 심사담당부서로부터 고발(송치)을 의뢰 받은 경우

나. 세관공무원이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기업 또는 개인이 원산지표시검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은닉·훼손하여 강제조사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원산지표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이첩을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첩보·이첩이 있거나 조사담당부서에서 자체 인지한 것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자가 적발일부터 2년간 원산지표시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관세청장이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의 특별조사를 지시한 경우

④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제3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심사담당부서에 이첩한다.

⑤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최초 수입신고물품이 위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업체의 위반물품과 동일한 물품(HS 4단위 일치)이 적발되지 않고 통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업체 주소지 관할세관 심사부서에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업체정보와 위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고발(송치)의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부서간 합동단속)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5조의 고발(송치) 의뢰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제5조(고발(송치) 의뢰기준) ①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한다.

1. 관계법령에서 형사벌칙(통고처분 대상은 제외한다)만을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인 경우
2. 위반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장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위반자가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4. 위반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지역)의 원산지인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공급·유통·판매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반자가 세관 또는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판매자 또는 생산자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관장이 고발(송치)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범칙조사 의뢰를 받은 조사부서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재조치)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안의 성격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되,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등 원산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반행위별 제재 조치 부과기준」에 불구하고 고발(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③ 시중유통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명령은 「관세법」 제23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물품의 소재지에서 시정할 수 있다.

1. 위반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2. 위반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반 물품이 소량이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현장조치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과징금 부과)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물품의 수량·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경감을 또는 가중율을 적용한다.

② 별표 위반행위 중 통관이후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위반행위는 1차 적발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되 별표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기간은 적발일부터 2년으로 하되, 통관단계에서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일 기준, 통관이후 시중유통단계에서의 기산일은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범칙조사시스템) 검사결과 등록일로 한다.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정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의 질의, 유사 건의 처리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부과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예정통지에 따른 납부대상자로부터 의견청취 후 또는 의견진술 기간 종료후
2. 사건 송치 후

제8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원산지표시검사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건에 적용한다.

②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예정통지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③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종전 지침 적용시 보다 과징금이 많아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통보되지 않은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한다.

②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사전통지(예정통보)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③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이 종전 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 보다 많아 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통관 단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 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5.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교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관세청 훈령 제1498호(2012.10. 8)

관세청 훈령 제1551호(2013. 7.12)

관세청 훈령 제1631호(2014. 9.5)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외무역법」에서 세관장에게 위탁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표시 검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검사직원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의 수입물품 및 그와 관련된 서류, 보관 장소 등을 검사하는 것(이하 "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2. "원산지 표시 검사직원"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른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교부받고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세관직원(이하 "검사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내 유통"이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에 있는 상태(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원산지국민감시단"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검사직원이 수행하는 검사 업무를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 또는 채용한 민간전문가와 검사보조요원을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수집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6. "검사보조요원"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보조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임시로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7.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검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훈령은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검사와 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 부과, 고발(송치)의뢰 등 검사 결과 조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및 고발(송치)의뢰 대상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절 검사 관할 및 조직 운영

제5조(검사의 관할) ① 검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검사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검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직원 지정·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검사직원에게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세관장은 검사직원이 전보, 담당 업무 변경 등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3절 검사 대상 및 방법

제7조(검사 대상 및 장소) ①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1.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
2. 제1호의 물품과 함께 보관된 국내물품

3. 제1호·제2호의 물품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② 검사 장소는 수입물품의 수입업체·판매업체 및 원산지 표시 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이다.

제8조(검사 처리 기한) ①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검사 계획 보고일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 표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방문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타 업체 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전국에 소재한 다수의 업체에 대하여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 일제 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정보 분석, 제보 등에 의하여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일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력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광역기동 검사팀을 구성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 건강 또는 안전과 직결되어 전국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사안

2.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3. 미행·잠복 추적 및 장기간의 은밀한 추적조사 활동이 요구되는 사안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안

④ 관세청장은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세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233조의3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검사의 수행

제1절 사전 준비

제10조(정보 수집) ① 검사직원은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대상 업체 선정)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검사 지시가 있거나 위반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및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검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검사 이력,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1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를 위반 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검사 계획을 통지한 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계획 수립) ① 검사직원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나 품목 등을 검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검사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2. 타 부서, 타 세관 또는 타 기관과 함께 검사하는 업체
3. 그 밖에 검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검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 계획을 보고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검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검사직원으로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검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직원만으로 검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검사 계획 통지) ①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하기 전까지 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직원 교육) ① 세관장은 검사직원이 방문 검사하기 전에 검사 취지, 관련 규정, 검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3호의 "원산지 표시 검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은 검사 대상 물품, 대상 업체의 특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검사

제15조(검사 착수) ①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검사 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원산지 검사공무원증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관계자가 입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검사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검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검사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수행) ① 검사직원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입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검사 또는 일부검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수입물품과 관련 장부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 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직원은 세관장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지내용 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검사직원은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검사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 검사직원은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외에도 유통이력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성실한 신고의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검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검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검사기관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증거보전 조치 등) ① 검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검사 관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검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검사 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는 자료 및 증거를 근거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업체의 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전량 판매하여 시정조치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직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사진 촬영, 견본 구입 등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검사직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유통 방지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검사 관계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검사직원은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 결과 보고·통지) ① 검사직원은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나 이 경우에도 15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2. <삭제 2014.9.5>

3.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수축산물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공산품

③ 세관장은 검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통지서"를 검사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검사 업체가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3장 사후조치

제1절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명령

제19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부착하고, 별지 제10조 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 세관 또는 반입 대상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관 관할에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반입명령 세관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 보세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입명령 세관장은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 사실을 물품 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시정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반입명령 대상이 소량이고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현지시정으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부피·중량이 거대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아 운송이 곤란하고 운송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현지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세관장은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제1절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시정명령) ① 검사직원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서" 및 별지 제11-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출력하여 검사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신속한 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교부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검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시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 결과 확인) ① 검사직원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명령 또는 시정명령한 물품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전·후 사진과 확인일자를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위반물품이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검사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과징금 부과

제22조(과징금 부과 대상 조사) ① 검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징금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고발(송치)의뢰 대상으로서 고발(송치)의뢰 후 과징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여 고발(송치)부서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검사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이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3조(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2주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의 의견 제출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③ 검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적정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에 의한 원산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결정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의견 제출 기한은 2주로 한다.

제24조(과징금 부과) ①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후 제23조의 기간 내에 대상자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세외수입고지서와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징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⑤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절 과태료 부과

제25조(과태료 부과 대상 조사) ① 검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검사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이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되 제28조제2항의 감경 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할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검사직원은 제1항의 의견진술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예정통지 후 제26조제2항의 기간 내에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결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그 대상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에 의견을 작성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절 원산지국민감시단

제30조(민간전문가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검사직원의 검사 참여 및 자문 등
2.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
3.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
4. 원산지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
5. 그 밖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민간전문가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민간전문가를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검사, 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검사보조요원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2.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보조
3.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② 세관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보조요원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1일 총 8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검사보조요원에게 일일근무 명령을 하여 당일에 수행할 업무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보조요원은 당일 근무활동을 기록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매 근무일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탄력근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보조요원의 퇴근 1시간 전까지 일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직원은 검사보조요원이 작성·제출한 일일 활동 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어 검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보조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 세관장은 검사보조요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검사보조요원의 복무 및 실적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을 통하여 역량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제2절 보고 및 통지 등

제32조(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① 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과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관리, 단속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입·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특이사항 보고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타 검사기관과 합동검사 내용
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검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
3.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검사 계획
4. 원산지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원산지 위반 여부 및 위반 유형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기타 언론매체 등에 검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검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검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 대상자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관계기관 통지) ① 세관장은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에 따른 위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이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첩 기관장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유관기관과 협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타 검사 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정보 교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단속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세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631호, 2014.9.2>

이 세칙은 201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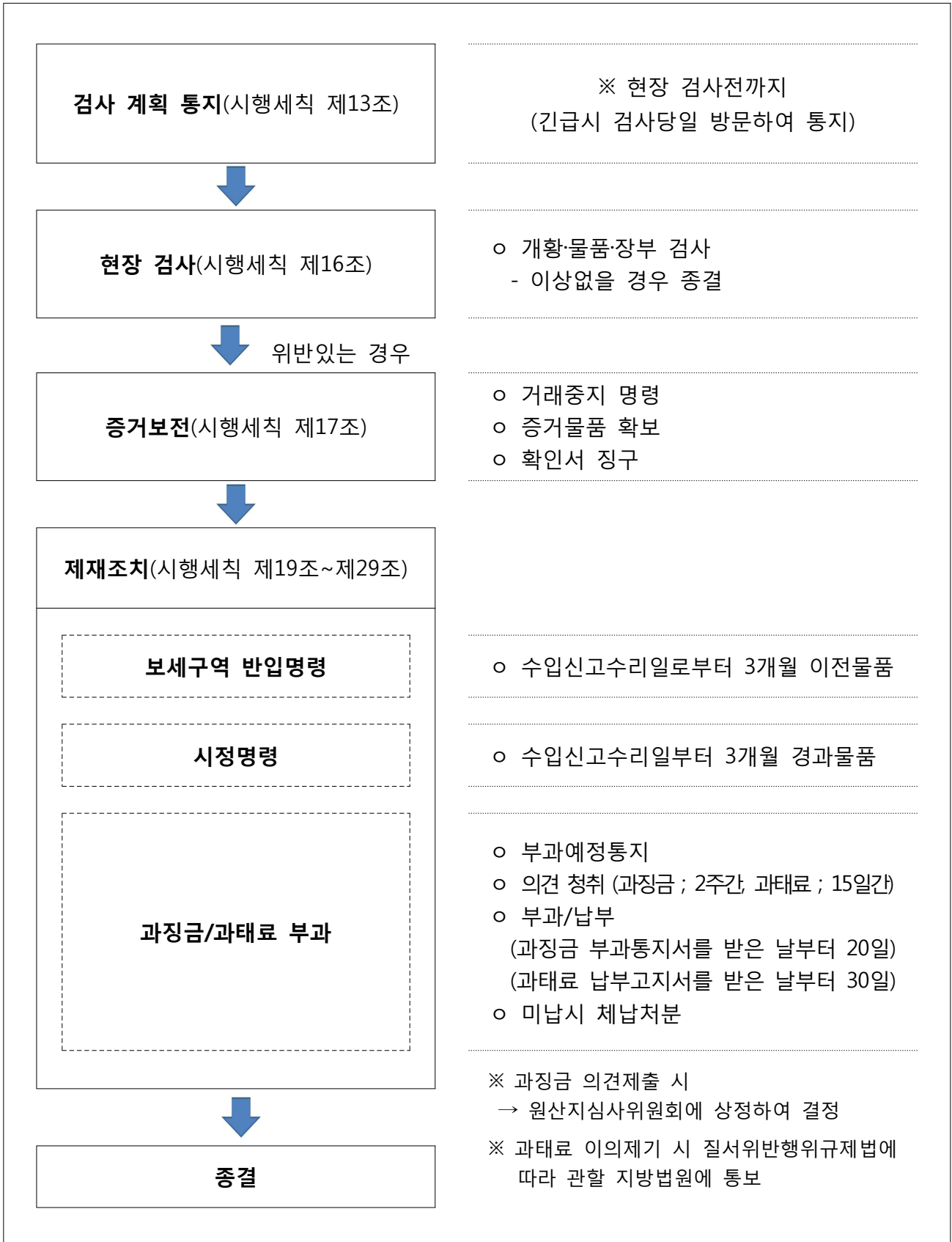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이 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6.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원산지표시 검사절차 안내도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성 명: (한자) (남, 여)

직 업:

주민등록번호:

2. 적발일시 및 장소:

3. 적발경위:

4. 위반내용:

5. 위반법조:

6. 과징금(과태료) 금액:

7. 증거자료:

조사일자: 20 . . .

조사자 소속: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면)

의견제출서

1. 과징금 부과 통지번호

2. 제출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남, 여)

3.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 자: (인)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14] 과징금 부과 통지서(제24조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시정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금액		원		
<p>대외무역법 제33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만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p> <p>과징금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세 관 장 (인)</p> <p><첨부> 고지서 ○부</p>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15]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26조 관련)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대외무역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법인 경우, 회사 소재지>
 성 명: <법인 경우, (주)○○○(대표이사 : 000)> (한자)
 생 년 월 일: <법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②×0.2)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②+(②×0.05)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05)+(②×0.012×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적용법조: 대외무역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이 면)

의견진술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한자) (남, 여)

생년월일:

2. 위반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 자: (인)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16] 과태료 부과통지서(제27조 관련)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대외무역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명칭): <법인 경우, (주)○○○(대표이사 : 000)>
주소: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인

[별지 1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제27조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대외무역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1. 과태료부과 통지(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p> <p style="text-align: center;">.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하</p>				

[별지 18]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대외무역법」 위반)(제29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20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대외무역법」 제5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
입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
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

세 관 장

직인